

시 민

문서번호	생활보건과-7963
결재일자	2013.4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생활보건정책팀장	생활보건과장
협조		



2013년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사업  
보조금 교부결정

2013. 4

복지건강실  
(생활보건과)

## 2013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

「2013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」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신청한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

### □ 관련근거
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보조금의 지급)
-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(지급대상사업 및 보조율)
- 2013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(생활보건과-7866, 2013.4.19)

### □ 지원대상 : 3개구 10개소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양천구	마포구	송파구
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신청	180,000	100,000	10,000	70,000

### □ 지원기준

- 개소당 최대 1억원 이내(「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」 별표1)
- 여성변기가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증·개축, 시설개선 또는 신축이 필요한 자치구 공중화장실 대상
  - 남녀변기수 비율 1:1이상(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)
  - 여성편의시설 : 리필 시트지, 기저귀 교환대, 유아용 보조의자
- 다중이용시설, 관광지, 공원, 시민체육시설 등 이용 인원이 많고 개선 시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우선 지원
- 기타 사업추진 가능성, 사업효과 등 고려
  - ※ 재개발 계획 등이 확정되어 철거 예정인 공중화장실은 제외

교부결정 내역 : 세부내역 불임 참조

- 예산액 : 250,000천원
- 교부결정액 : 180,000천원(집행율 72%)
- 예산잔액 : 7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구분	화장실명	결정금액	사업비(신청금액 포함)			검토결과
				계	시비	구비	
계			180,000	515,000	180,000	325,000	
1	양천구	신월근린공원 공중화장실	100,000	225,000	100,000	125,000	적합
2	마포구	망원유수지 공중화장실	10,000	20,000	10,000	10,000	적합
3	송파구	소 계	70,000	270,000	70,000	200,000	
		석촌동 주민센터	20,000	170,000	20,000	150,000	적합
		오금동 백토공원	30,000	60,000	30,000	30,000	적합
		가락동 가락공원	20,000	40,000	20,000	20,000	적합

- 예산과목 : 생활보건관리향상, 공중위생관리개선,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, 자치단체자본보조

교부잔액 추가 교부 계획

- 시비보조금 잔액 : 70,000천원
- 자치구 보조금 추가 신청시 검토 후 수시 교부

- 불임
1. 2013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(생활보건과-7866,2013.4.19)
  2.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세부내역 1부. 끝